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79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36호('21.12.28.)로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되고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2번지·송인동 56-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동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1. 대상지(변경)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3-2번지	41,261	누락 및 면적 착오로 일부 면적정정,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구역면적 변경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56-4번지 일대	43,093	
변경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3-2번지	62,926.7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56-4번지 일대	41,926.5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비 고
기정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3-2번지 일대	2021.9.23.	41,261	추가구역은 별도의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56-4번지 일대		43,093	
변경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3-2번지 일대	2021.9.23.(기존구역) 2023. . . (추가구역)	62,926.7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56-4번지 일대	2021.9.23.(기존구역) 2023. . . (추가구역)	41,926.5	

3. 지정사유(변경없음)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변경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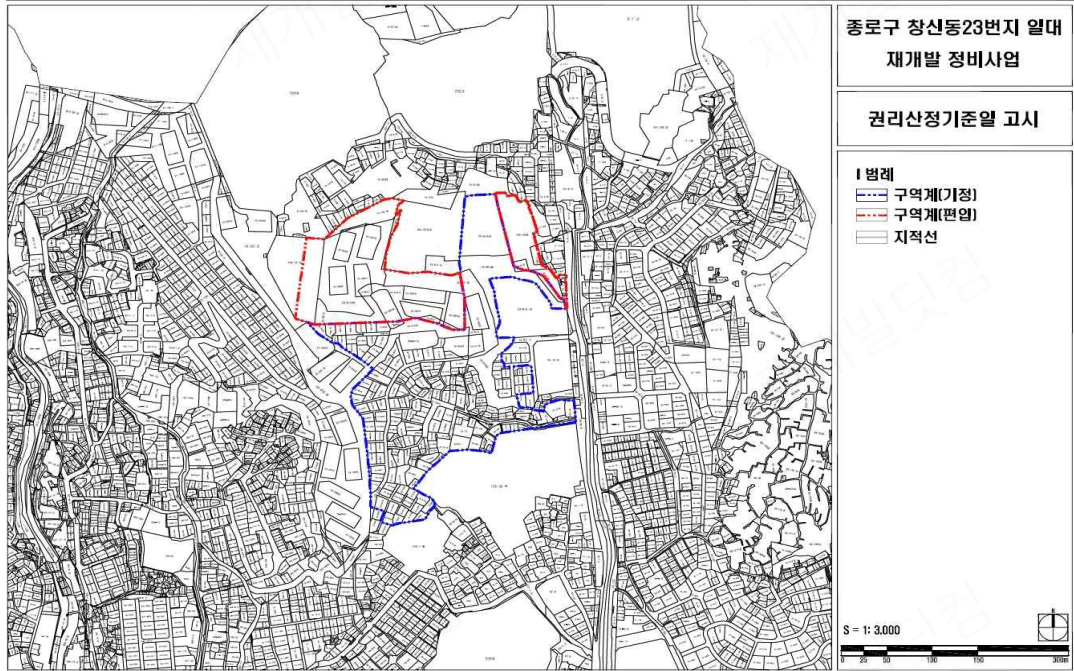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도면

○ 종로구 창천동 23-2 번지 일대



○ 종로구 송인동 56-4 번지 일대

